등록번호	건축과-23917
등록일자	2015.10.19.
결재일자	2015.10.2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	건축1팀장		건축과장	환경도시국장	
오순환		안경선		한봉구	전결 10/20 황도현	
협	조	건축민원报 건축2팀징 공공시설됨	+	이상홍 윤학병 나동호		

2015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



서 대 문 구 건축과

2015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

건축허가 후 장기간(2년)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련규정 위반여부와 미사용승인 사유 등을 점검하여 시공중인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Ⅰ 관련근거

□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(건축행정의 지도·감독)
□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(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)
□ 2015년 서울특별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(건축기획과-2897호, '15.02.10.
□ 2015년 우리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(건축과-7144호, '15.03.27.)

Ⅱ 점검개요

□ 점검대상	:	총	39동
--------	---	---	-----

- 기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: 28동 (2012.06.30일까지 건축허가분)
- 신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: 11동 (2013.06.30일까지 건축허가분)
 - ※ 세부현황 별첨 1 참조
- □ 점검기간 : 2015.10.21. ~ 2015.10.27.(5일간)
- □ 점검방법
 - 2015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지역담당이 현장조사 실시

Ⅲ 세부 점검내용

- □ 기존 관리대상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위반사항 시정여부
- □ 신규 조사대상 건축물의 공사착수 여부 및 위반사항 내역 등

Ⅳ 결과조치

- □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는 취소 예고후 건축허가 취소
- □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통지 후 단계별 행정조치
 - ※ 신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별첨 3의 '장기미사용승인 관리카드' 작성

V행정사항

- □ 담당자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(별첨 2)
- □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동담당자가 세움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에 행정 조치 단계별로 입력관리
- 붙임 1. 기존 장기미사용증인 건축물 및 신규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1부.
 - 2. 장기미사용증인 건축물 점검보고서 1부.
 - 3.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1부. 끝.